

가족 내에서의 경제활동 어떤 분담이 양성평등인가?

박 명 희 (동국대학교 가정교육과 교수)

가족 내에서의 양성평등한 경제활동에 대해 논의하자면 우선적으로 고려해야할 부분이 평등과 효율성의 개념일 것이다. 전통경제학자들은 가정을 자원을 획득하고 분배, 소비하는 경제주체로 간주하고 가계소비, 가계소득의 분배, 가족구성원의 노동공유 등 가계의 시장행위 및 물질적 측면의 가족행동에 관심을 두었다.

우리가 양성평등한 가족내의 경제활동이라 함은 따라서 가족의 자원을 획득, 분배, 소비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자원을 평등하게 획득하고, 분배하고, 소비하는가를 생각해야 할 것이고 가족구성원의 노동공급 등 가계의 시장행위 및 물질적 측면의 가족활동이 어떻게 평등하게 배분되고 가족구성원 사이에 이에 대한 불만이 없이 생활할 수 있는가에 초점이 모아져야 할 것이다.

결혼의 경제학에 있어서의 양성평등의 의미

양성평등적 가족경제활동은 결혼의 경제학에서부터 시작한다. 일반적으로 결혼이란 두 남녀가 정신적·육체적으로 결합하여 한 가족을 이루는 것으로 개인적 의미뿐 아니라 사회적 의미를 갖는 행위로 이해한다. 하지만 사회교환론적 관점에서의 결혼은 남녀의 배우자 선택은 결혼시장에서 지닌 화폐적·비화폐적 제반자원의 평형에 의해 이루어지는 행위로 간주한다. 물론 이러한 사회교환이론에서 보수와 대가는 객관적 공평성이나 평등성보다 주관적인 평가, 즉 배우자의 자원에 대해 자신이 인정한 보상이나 대가가 더욱 중요하며 절대적 보상수준이 높다고 인지할 때 만족한다.

시장원리란 가격 매커니즘을 통해 수요와 공급이 결정되는 관계이므로 결혼시장에 있어서의 수요와 공급의 원리를 적용해 보면, "다양한 기준으로 평가했을 때 자원을 많이 가진 여성과 남성이 결합되고 상대적으로 자원을 적게 소유한 여성과 남성이 결합할 경우 누구도 다른 사람의 만족감을 손상시키지 않으므로 모두가 만족하여 개선의 여지가 없는 상황, 즉 파레토최적의 상황을 연출한

다. 그러나 결혼시장에서 자원을 더 많이 소유한 여자와 자원을 더 적게 소유한 남자가 결합하고, 자원을 더 많이 소유한 남자와 자원을 적게 소유한 여자가 결혼하는 경우 결혼생활에 있어서는 이것이 더 좋은 대안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이론적으로 임금이 낮은 여자는 임금이 높은 여자에 비해 시장에서의 시간가치가 낮으므로 가사에 더 많은 시간을 소비하고 임금이 높은 남자는 시장노동을 함으로서 결혼의 이익을 극대화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현실에 있어서는 임금이 높은 여자와 임금이 낮은 남자의 결합인 경우 시간가치가 낮은 남자가 가사에 더 많은 시간을 소비하는 것에 대해서 관습적으로 용인하지 않음으로써 여자가 시장노동과 가사노동 모두에 불평등하게 기여하는 경우가 생기게 된다.

이와 반대로 임금이 높은 남자와 임금이 낮은 여자의 결합과 같은 전형적 결혼패턴에서 가족 내의 양성평등적 경제생활이라 함은 시장 임금이 높은 남성은 시장노동에만 임금이 낮은 여성은 가사노동에만 소비하는 것이 효율적이며 평등한 것으로 치부하게 된다. 그러나 이 경우 시장노동과 가사노동의 평가에 있어 시장노동을 우등노동으로 가사노동을 열등한 노동으로 가정할 경우에 해당하는 분석이 된다. 우리가 가족의 경제활동에 있어서 기여율 대로 분배하고 지출하는 것이 평등한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이는 소득세의 누진세율을 거부하는 것과 같은 논리일 것이다. 사회적으로 남녀의 소득의 격차가 존재할 경우 가족 내에서 소득의 기여율에 따라 권력을 갖게 되도록 계획되어서는 곤란할 것이다

결혼비용에 있어서의 양성평등

결혼은 사회적으로 용인된 남·녀의 성적·경제적 결합인 만큼 결혼과 가정생활에 있어서 경제적 부담을 누가 지느냐는 그 가족의 권력구조와 상당한 관련을 가지게 된다.

결혼비용은 결혼을 하기 위해, 또는 결혼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투입되는 화폐적·비화폐적 비용을 말하는데 주관적 요소가 많이 개입되지만 결혼에서 경제적 교환의 대상이 되는 모든 결혼식비용, 신혼여행비용, 배우자 예단·예물비용, 배우자 부모예단, 예물비용, 배우자 친척예단비용, 살림살이 비용, 주택비용, 기타 비용(합값, 부케값)등이 있고 비화폐적 비용으로 결혼생활을 원만히 유지하게 위해 투입되는 노력, 시간 그리고 정신적 스트레스 등이 있다.

전통적으로 어느 문화권에서나 결혼을 함에 있어서 열등한 배우자가 상대방에게 주는 자원을 남성이 열등한 경우는 신부값을, 여성이 열등한 경우는 지참금을 제공하고 결혼하게 된다. 대부분의 사회에서 이는 결혼적령기의 남성의 수와 여성의 수와도 관련이 있다. 즉 수요와 공급의 문제이기도 하다. 이러한 지참금의 풍습은 결혼시 신부가 신랑에게 가져가는 재화나 화폐로, 생계활동에서

여성의 기여도가 낮은 고도로 계층화된 사회에서 혼인하는 여자에게 본래 자기가 친족의 자산에 대해 지니는 권리만큼의 몫을 지불하는 일종의 상속재로도 여겨졌다. 이러한 지참금의 출현은 딸에게 재산상속을 인정하는 것이며 딸에게 재산을 줄 수 있는 아버지의 경제력을 과시하고, 딸의 지위를 보존·강화함으로써 시집가족으로부터 자율성을 부과하고 남편의 절대적 권력으로부터 자유스러워질 뿐 아니라 혼인이 해소될 때 자신의 재산에 대한 통제권을 획득하게 하는 방편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풍습은 그리스의 지참금 제도를 연구한 Lambini 외(1985)에 의해서도 보고되었는데, 그리스 민법상 지참금은 딸이 상속받을 권리가 있는 몫이고, 공식적·법적 수준에서 부모들이 딸이 혼인해서 이루는 가족에게 제공하는 경제적 보조의 의미로써, 연약한 여성의 지위를 보호하고 강화하는 목적이었으나 실제의 혼인 성립과정에서는 그러한 기능보다는 여성들이 혼인할 기회, 혹은 장래성이 있는 남편을 얻을 수 있는 수단으로 변화하여 본래의 목적을 상실하였다고 하였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과거 딸의 재산상속 혹은 경제적 지위보장이라는 의미로부터 부모의 능력에 상관없이 단순히 딸에게 신랑을 얻어 주기 위한 수단으로 변모했다고 할 수 있다(최경숙, 1995). 이러한 재산상속의 의미로 주어졌던 딸의 지참금은 오늘날에는 아들의 결혼비용까지 그 의미가 확대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최근 들어 아들의 결혼비용으로 주택을 마련해 주었던 일부 아들의 부모들은 가족법의 변화로 짧은 결혼생활 끝에 이혼할 경우, 이혼시 며느리에게 경제적 지분이 돌아갈 것을 우려하여 주택의 명의를 아들 명의로 하지 않고 어느 정도 결혼생활이 지속된 후에 자산을 상속하는 경향까지 생긴다고 한다.

현대사회의 결혼비용은 지참금이나 신부값의 전통적 의미보다는 배우자와 배우자 가정의 가치에 상응하는 대가로 제공하는 교환의 조건으로 변모하였다(문숙재외, 2000). 이러한 교환이론은 최소의 비용을 투입하고 최대의 이익을 보상받는 이익극대화의 원리와 공정교환을 유도하는 분배정의의 원리로 구분되는데 결혼배우자의 선택에서는 이익극대화의 원칙이 적용되고 결혼배우자와의 결혼비용부담에 있어서는 양자관계에서 보다 적절하게 적용되는 분배정의 원칙이 더 적용된다고 본다. 즉 비용이 클수록 보상이 크고, 보상이 클수록 비용이 커진다는 분배정의의 원칙은 상대방을 고려하는 상호적 비교가 된다.

분배정의의 원리에 따르면 신랑의 배경 특성들은 여러 측면에서 현재나 앞으로의 결혼생활에 있어 신부에게 만족감을 가져다 주는 요인이므로 신부측에 기여하는 가치가 될 수 있고 신랑의 직업은 앞으로 투여할 노력과 시간을 생각할 때 비용으로 생각할 수 있다.

직업 중에서 일반적으로 중요하다고 평가되는 직업은 그것에 투여하는 비용이 결과적으로 신부의 경제적·사회적 지위를 보장한다는 점에서 상대에게 이익을 주는 것이므로 분명히 상대에게 상응하는 보상을 요구할 수 있는 비용적 요소를 포함하는 셈이 된다. 한국사회에서 직업, 학벌, 가족

의 사회경제적 지위 등 혼인 당사자 특히 신랑의 사회경제적 배경 특성들로서 상대적으로 보상을 유발한다는 점에서는 분배정의의 목적상 투자의 개념에 해당된다고 볼 수도 있다.

한국의 사회에 있어서 여성의 사회진출이 용이하고 미래의 기대수익이 보장된다면 남성의 직업이나 학벌이 보상을 유발하는 것과 동시에 여성의 직업지위에도 보상적 기대가 존재하는 분배정의의 법칙이 존재하여야 하나 남성의 직업이나 학벌의 가치가 더욱 고평가된 반면 여성의 경우는 그렇지 못하다. 신랑의 사회적 지위나 경제적 능력이 안정되고 보장된 직업일수록 신부측의 혼수의 양이 커지거나 그것을 요구하는 목소리는 상대적으로 높아지는 반면 신부의 직업지위는 신랑의 결혼비용에 차이를 초래하지 않는다(정순희외, 2000).

부모부담 총비용은 신랑측은 직업이 없는 신부와 혼인할 때 오히려 많이 들었음을 알 수 있다. 신부의 직업지위는 신랑측 비용에 오히려 부정적인 영향력을 미치고 있었다. 즉 직업을 가진 신부와 결혼하는 신랑측은 결혼비용이 오히려 감소하는 결과를 보여 여성은 직업지위가 높아도 이러한 조건이 남성만큼 분배정의에 입각해서 보상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곧 결혼혼수비용에서 양성평등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을 반증한다.

일반적인 결혼비용부담에 있어서도 평균적으로 여성이 총결혼비용의 61.5%를 남자측이 38.5%를 담당한 것으로 나타났다(이기춘, 1992). 특히 여자측의 80%이상이 결혼비용의 50%이상을 부담한 것으로 결혼비용의 여자측 부담이 매우 크다. 특히 자녀의 경제적 능력보다는 그들 부모의 경제적 능력이 결혼비용에 영향을 미치므로 딸 가진 부모는 결혼비용지출에 있어서 아들 가진 부모보다 부담이 더 크게 작용하고 있었다.

여성의 직업지위가 남성에 비해 저평가되는 이유

여성이 남성특성이나 능력을 가지고 있고 스스로를 부각시키려는 의지를 가지고 있다해도 남성만큼의 성공이 보장되지는 않는다. 여러 연구결과에 의하면 성별을 알지 못했을 때 남자라고 생각하고 평가하는 결과와 여성이라고 생각하고 평가하는 결과를 비교해 보면 여성일 경우 일을 잘 하지 못할 것이라는 기대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O'Leary & Hansen, 1982).

전통적인 남성분야에서 선구자로 여성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보다 미묘한 장벽을 넘어서야 한다. 특정직업에서 여성의 수가 극소수라는 사실은 그 분야 진입시도에 방해가 될 수 있다 즉 과거의 차별로 인한 결과가 다시 현재의 젊은 여성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역할모델이 될 선배 여성이 없으면 많은 역할모델이 있는 신입 남성들보다 불리한 조건이 되는 것이다. 여성의 경우 직장에서의 성공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비공식적인 관계에서 제외된다. 따라서 여성이 남성중심분야에서

성공할 가능성은 낮아지게 마련이다. 또 하나의 차별은 직접적인 노동시장 차별을 들 수 있다. 노동시장 차별이란 동일한 능력을 가진 두 사람이 단지 그들이 성이 다르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다르게 취급된다는 의미이다. 법적으로 또는 선인적으로 노동시장의 차별이 없어야 한다는 것이 강조되고는 있지만 현실에 있어서는 여전히 이러한 차별이 존재하며 결혼시 신랑측에서도 이러한 여성차별이 존재함을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다. 노동시장 차별로 인해 생기는 간접효과나 피드백 효과는 상대적으로 여성의 경제적 지위를 저하시키고 기대수익을 감소시키는 원인이 된다. 따라서 여성에 대한 교육투자는 남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수익률이 떨어지게 되고 효율성 측면으로 볼 때는 여성에 대한 교육투자보다는 혼수나 지참금을 동반하여 딸을 능력있는 사위를 얻는 것이 더욱 효율적인 것으로 생각하게 하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

이혼시 어떤 분배가 양성평등인가?

여성의 사회진출, 전통적 가치관의 변화 등으로 점차적으로 증가하던 이혼율이 최근에는 급속히 증가하고 있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산업화 이전 여성의 시장노동기회가 매우 한정적 이었을 시기에 여성은 결혼을 통해 성별노동분담의 이익을 누려왔다. 그러나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증가는 전통적 노동분담을 붕괴시키고 상호의존성의 감소되고 결혼의 경제적 이익도 감소되므로 이는 결혼의 와해를 촉진시키는 원인으로 작용한다.

결혼과 이혼에 대한 지나친 기대도 이혼을 촉진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 결혼의 이익은 기대이익인데 결혼의 기대이익을 지나치게 높게 잡았을 경우 이혼은 보다 쉽게 일어난다. 또한 이혼에 대한 지나친 기대도 이혼율을 높이는 원인이 되고 있다.

여성의 소득은 이혼과 비례하는 경향이 있는데, 남편의 소득과 독립된 소득이 부인에게 있는 경우 다른 조건이 동일하다면 그 부인은 불만족스러운 결혼을 끝낼 가능성이 더 크다는 것이다(Ross & Sawhill, 1975). 또 Becker(1973)에 의하면 부인의 소득 대 남편의 소득비가 낮으면 여성이 가정에 남아있는 것이 직장에서 일하는 것보다 유리하기 때문에 결혼안정성이 증가한다고 하였다. 즉 남편과 부인의 소득격차는 이혼의 가능성을 줄여준다는 반증이 되기도 한다. 과거 한국가족의 이혼율이 낮았던 것은 이러한 사회제도적 특성과 무관하지 않으며 최근 가족법과 이혼법의 개정으로 이러한 제도적 불리함이 수정됨으로써 이혼율이 높아지는 간접적 변수가 되기도 했다. 그러나 아직도 이혼을 할 경우, 현재의 사회제도적 상황에서 편모들이 격게 되는 가장 어려운 문제는 경제적인 어려움이다. 아직도 여성의 임금격차가 존재할 뿐 아니라 자녀를 데리고 있는 편모의 경우 경제적 빈곤가정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커진다. 이는 대부분의 여자가 아직도 가족내의 역할을 수행하고 남

자는 직업에 세계에서 역할을 수행하도록 되어있는 특성이 크게 변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여성노동 인구의 평균임금은 남성임금의 65% 수준이며(1997, 통계청) 대부분의 여성이 어린 자녀의 양육을 맡게 되므로 어린 자녀를 동반하고 일을 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이러한 현상은 우리나라 뿐 아니라 미국, 프랑스의 편모가정에서도 나타나는 현상이다(문숙재외, 2000, 재인용).

가족의 소비활동 어떤 소비활동이 양성평등인가?

가족의 소비활동은 주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사례조사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가족의 소비에 있어서 우선순위가 남편 또는 자녀를 위한 소비가 대부분이며 자신의 요구를 위한 소비는 항상 마지막 순위에 놓는 것이 대부분이다. 특히 직업을 가진 여성의 경우에도 자신의 직장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인간관계유지를 위한 소비 등에 지출하고 있지 못한 실정이다(이영자, 2000). 경제적으로 빠듯한 가정의 주부는 대부분 자녀의 학비조달을 위해 직장에도 나가고 부업도 하면서 자녀교육을 위해 가계의 씀씀이를 최소화하는데 주력한다. 이들은 노동을 하면서도 노동현장에서 받는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 특별한 소비를 하지도 못한다. 기혼남성의 75.7%가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 술을 마시는 반면, 여성은 쇼핑(12.7%)을 하거나, 친구와의 대화(19.1%), 또는 노래부르기 등 오락(34.1%)으로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있었다. 남성의 경우 직장동료와 함께 여가활동을 보내는 반면(남59.3%, 여38.7%), 여성 특히, 기혼여성의 경우는 직업생활이 불안정하고 가사에 쫓기기 때문에 직장동료와의 어울림이나 유대를 갖지 못하고 있다.

주부노동자들의 한결같은 걱정은 돈이 모자라서 자녀를 학원에 제대로 보내지 못하는 것이다. '학원을 안보내면 안된다'는 강박관념은 학교교육에 대한 불신과 불만과도 상통한다. 반면에 "남편은 자녀의 교육비 충당의 어려움을 이해 못하기 때문에 애들한테 교육에다 쓸데없이 투자한다고 하고 그거 가르쳐서 뭐하겠냐고 하면서...." 결국 교육비 부담과 걱정은 거의 여성의 몫이고 기혼여성노동자는 이를 위해 필사의 노력을 하고 있다. "제가 직장을 나가니까 혹시 애들을 잘 건사하지 못하는게 내 책임인 것 같아서 더 과외에 신경을 쓰게 되죠.."

반면 기혼 여성 노동자들의 개인을 위한 소비는 극도로 절제된 수준이다. 대부분의 경우 여성의 개인 소비는 기본화장품이나 이따금 사는 정도이고 자신을 위한 소비는 최대로 절제한다. 저소득 기혼여성노동자의 사례를 살펴보면 불가피한 생계별이와 가사노동의 이중부담이 가중되고 남편의 가사노동이 미비한 상황에서 시간을 최대한으로 쪼개 써야하는 정신적·육체적 압박을 받고 있다. 또한 이들은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데도 불구하고 자녀양육과 교육에서 남보다 뒤떨어지지 않기 위해 정신적으로 절대적인 자기희생을 감내한다. 게다가 전업주부의 역할을 못하는 것에 대한 죄책

감까지 가지고 가정살리기에 더욱더 열중하게 만든다.

여가에 있어서도 가족이 절대적으로 비중을 차지하여 가족의 뒷바라지를 위한 방편으로 또는 가족중심으로 취미와 여가생활이 조종된다. 이들은 또한 친교의 기회나 시간이 거의 없고 직장생활의 불연속성 때문에 사회친구가 별로 없는 상황에서 남편과 가족관계 이외의 사교생활을 하기가 힘들다. 가족은 이들의 일상문화를 전적으로 지배한다. 이런 상황은 가부장제의 사회·문화적 제약에 따른 여성의 여가 소비생활의 빈곤성을 대변해 주는 것이다(이영자, 2000).

소비생활의 우선순위를 결정하는데 있어서 소득이 높은 기혼여성의 경우라도 남편과 자녀의 소비를 우선순위로 하는 경우는 비교적 많지만, 최근 들어 자신들의 소득을 함께 관리하지 않고 따로 관리하는 전문직 부부의 경우는 이러한 관계가 변화하는 사례도 일부 나타나고 있다(본 연구의 심층면접 결과를 보면 자녀가 아직 없는 일부의 맞벌이 가계에서 이러한 사례가 나타나고 있음).

분배와 소유권 어떤 것이 양성평등인가?

자산의 소유권에 관한 부분에서도 현재 주택은 남편이 자동차는 아내가 하는 식으로 젊은 세대 간에 자산의 분리 소유 경향이 나타나고 있는 있으나 공동의 명의로 하자는 제안을 할 경우 남편이 동의할 것이라는 추측은 하지만 실제로 남편과 공동명의로 한 경우는 거의 없었다. 반면에 주택은 남편명의 동산인 통장명의로는 아내가 하는 식의 공동분배패턴은 일부 보이고 있었다. 최근 결혼을 앞둔 남녀들 사이에 공동자산을 공동명의로 하자는 운동이 일고 이름도 아버지와 어머니의 성을 함께 쓰자는 운동이 일고 있으나 아직 일부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현실의 제도에 있어서 자산의 소유가 각 가정의 부부가 평등하게 소유하고자 해도 제도적 차원에서 그러한 소유가 불가능한 경우가 있다. 주택의 청약자격에 있어서는 가구주라야만 하며, 가구주의 경우는 남편의 경우만 해당되기 때문에 청약을 통해 분양 받은 아파트나 주택의 경우는 공동명의로 등록할 수 없으며, 등록을 원할 경우 복잡한 절차는 물론 세제상의 불이익이 오는 경우가 생긴다는 점이다. 가족경제활동에 있어서 소비와 분배, 소유에 있어서 양성평등의 과정은 앞으로 많은 논의를 거쳐 어떤 것이 양성평등인 것인가를 충분히 논의하고 이에 대한 실행과 사회·제도적 수정이 있어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 문숙재, 정순희, 허경옥(2000). 가족경제학, 교문사
- 이영자(2000). 소비자본주의 사회의 여성과 남성, 나남
- 최경숙(1995). 결혼의례절차와 물질적 재화 교환의 관행에 관한 연구 -도시 중산계층 사례연구를 중심으로- 이화여대 석사학위 논문 미간행
- 이기춘, 조은정(1992). 도시신혼가계의 결혼비용과 신혼주거자금에 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9, p.95-113
- 통계청(1997). 여성노동통계
- O'Leary & Hansen(1982). Trying Hurts women, Helps Men : The Meaning of Effort, in H.J. Bernardin(ed), Women in the Work Place, New York: Preager, p.102-104.
- Gery Becker(1973). A Theory of Marriage: part I,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81, p.813-847
- Ross. H. L. & Sawhill. I.V.(1975). Time of Transition, Washington D.C.: Urban Institute